

◎자살대책기본법의 일부 개정안 법률안 연구 대조표

○자살대책기본법(2006년 법률 제 85호)

개정안	현행
<p>목적</p> <p>제 1 부 총칙(제 1 조-제 11 조)</p> <p>제 2 부 자살종합대책 대강 및 도도부현 자살대책 계획 등(제 12 조-제 14 조)</p> <p>제 3 부 기본적 시책(제 15 조-제 22 조)</p> <p>제 4 부 자살종합대책 회의 등(제 23 조-제 25 조)</p> <p>부칙</p>	<p>목적</p> <p>제 1 부 총칙 9 제 1 조-제 10 조)</p> <p>제 2 부 기본적 시책(제 11 조-제 19 조)</p> <p>제 3 부 자살종합대책 회의(제 20 조·제 21 조)</p> <p>부칙</p>
<p>제 1 장 총칙</p> <p>(목적)</p> <p>제 1 조 이 법률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높게 유지되고 있는 <u>상황인</u> <u>상황</u>이고, <u>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이에 대처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에 비추어서</u> 자살대책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등의 책무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자살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 등으로 인해 자살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자살방지를 도모하고 그와 함께 자살자의 친족 등의 충실한 지원을 도모하고 더욱 더 국민이 건강하고 살아가는 보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1 장 총칙</p> <p>(목적)</p> <p>제 1 조 이 법률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높게 유지되고 있는 <u>상황인</u> <u>만 큼, 자살대책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등의 책무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자살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 등으로 인해 자살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자살방지를 도모하고 그와 함께 자살자의 친족에 대한 충실한 지원을 도모하고</u> 더욱 더 국민이 건강하고 살아가는 보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기본 이념)</p> <p>제 2 조 <u>자살대책은 삶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으로서, 모든 사람이 소중한 개인으로서 존중됨과 동시에, 살아갈 힘을 기본으로 하여 삶의 보람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원과 그것을 뒷받침하고 추진하기 위한 환경의 정비 충실이 폭넓고 적절하게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되지 않으면 안된다.</u></p>	<p>(기본 이념)</p> <p>제 2 조 [신설]</p>

\*Korean translation of old and new Basic Law on Suicide Countermeasures [Japanese] (Refer to Eng. version: Suicide Policy Research 2017; 1:8-13)

<p>2 자살대책은 반드시 개인의 문제만으로 <u>추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u>, 그 배경에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있다는 것을 포함하여 사회적 대책으로서 실시되지 않으면 안된다.</p> <p>3·4 [생략]</p> <p>5 자살대책은 <u>보건, 의료, 복지, 교육, 노동, 기타 관련 시책과 유기적 연계가 마련되어</u> 종합적으로 실시되지 않으면 안된다.</p>	<p>자살대책은 반드시 개인의 문제만으로 <u>추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u>, 그 배경에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있다는 것을 포함하여 사회적 대책으로서 실시되지 않으면 안된다.</p> <p>2·3 [생략]</p> <p>4 자살대책은 국가, 지방공공단체, 의료기관, 사업자, 학교, 자살 방지 등에 관한 활동을 실시하는 민간단체, 기타 관계자들의 상호 밀접한 연계하에 실시되지 않으면 안된다.</p>
<p>(국가의 책무) 제 3 조 국가는 전 조항의 기본 이념(다음 <u>항</u>부터 「기본 이념」이라고 한다.)에 준하여, 자살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및 실시할 책무가 있다.</p> <p>2 지방공공단체는 기본 이념에 따라 자살대책에 대해서 국가와 협력하면서 해당 지역의 상황에 맞는 시책을 수립 및 실시할 책무가 있다.</p> <p>3 국가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전 항의 책무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필요한 조건 및 기타 원조한다.</p>	<p>(국가의 책무) 제 3 조 국가는 전 조항의 기본이념(다음 <u>조</u>부터 「기본 이념」이라고 한다.)에 준하여, 자살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및 실시할 책무가 있다.</p> <p>[신설]</p>
<p>[삭제]</p> <p>제 4조 [생략]</p>	<p>(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제 4조 지방공공단체는 기본이념에 준하여 자살대책에 대해 국가와 협력하면서 해당 지역의 상황에 맞는 시책을 수립 및 실시할 책무가 있다.</p> <p>제 5조 [생략]</p>
<p>(국민의 책무) 제 5조 국민은 <u>삶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으로서 자살대책의 중요성에 관한 이해와 관심</u>이 깊어지도록 노력한다.</p> <p>(국민의 이해 증진)</p>	<p>(국민의 책무) 제 6조 국민은 자살대책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깊어지도록 노력한다.</p> <p>[신설]</p>

<p><b>제 6 조</b>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교육 활동,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자살대책에 관한 국민의 이해가 깊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p> <p>(자살예방 주간 및 자살대책강화의 달)</p> <p>제 7 조 국민들 사이에서 널리 자살대책의 중요성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고조시킴과 동시에, 자살대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도움이 되기 위해 자살예방 주간 및 자살대책강화의 달을 마련한다.</p> <p>2 자살예방 주기는 9 월 10 일부터 9 월 16 일까지로 하고, 자살대책강화의 달은 3 월로 한다.</p> <p>3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자살예방 주간에 계몽 활동을 널리 전개하도록 하고, 그에 걸맞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p> <p>4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자살대책강화의 달에 자살대책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 및 관련 단체와 상호 연계 협력을 도모하면서 상담 사업, 기타 그에 걸맞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p> <p>(관계자의 연계 협력)</p> <p>제 8 조 국가, 지방공공단체, 의료기관, 사업주, 학교(학교 교육법(1947 년 법률 제 16 호) 제 1 조에서 규정하는 학교를 말하며, 유치원 및 특별지원학교 유치부를 제외한다. 제 17 조 제 1 항 및 제 3 항에 있어서 동일), 자살대책에 관한 활동을 하는 민간 단체, 기타 관계자는 자살대책의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 연계를 도모하면서 협력한다.</p>	
<p>제 9 조 (생략)</p>	<p>제 7 조 (생략)</p>
<p>(삭제)</p>	<p>(삭제의 대강)</p> <p>제 8 조 정부는 정부가 추진해야 할 자살대책의 지침으로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자살대책의 대강을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p>

<p>제 10 조 [생략]</p> <p>(연차 보고)</p> <p>제 11 조 정부는 매년 국회에 우리나라 <u>자살의 개황</u> 및 강구한 자살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p>	<p>제 9 조 [생략]</p> <p>(연차 보고)</p> <p>제 10 조 정부는 매년 국회에 우리나라 <u>자살의 개요</u> 및 정부가 강구한 자살대책의 <u>실시 상황</u>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p>
<p>제 2부 <u>자살종합대책대강 및 도도부현 자살대책계획 등</u> (<u>자살종합대책대강</u>)</p> <p>제 12 조 정부는 정부가 추진해야 할 자살대책의 지침으로서 기본적으로 종합적인 자살대책대강(다음 조항 및 제 23 조 제 2항 제 1 호에 있어서 「자살종합대책대강」 이라 한다)을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p> <p>(도도부현 자살대책계획 등)</p> <p>제 13 조 도도부현은 자살종합대책대강 및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서 자살대책에 대한 계획(다음 항 및 다음 조에서 「도도부현 자살대책계획」 이라 한다)을 정한다.</p> <p>2시정촌은 자살종합대책대강 및 도도부현 자살대책계획,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해당 시정촌의 구역 내에서 자살대책에 대한 계획(다음 조에서 「시정촌 자살대책계획」 이라 한다)을 정한다.</p> <p>(도도부현 및 시정촌에 대한 교부금의 교부)</p> <p>제 14 조 국가는 도도부현 자살대책계획 또는 시정촌 자살대책계획에 준하여 해당 지역의 상황에 따른 자살대책을 위해 필요한 사업, 그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등을 실시하는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에 대한 해당 사업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진되는 자살대책의 내용, 기타 사항을 감안하여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p>	<p>[신설]</p>

<p><u>제3부 기본적 시책</u> <u>(조사 연구 등 추진 및 체제 정비)</u> <u>제 15 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자살대책의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실시에 도움이 되도록 자살의 실태, 자살 방지, 자살자의 친족 등 지원 방법, 지역의 상황에 맞는 자살대책의 방법, 자살대책의 실시상황 등, 또는 마음 건강 유지 증진에 대한 조사 연구 및 검증, 그 성과의 활용을 추진함과 동시에 자살대책에 관한 선진적인 대책에 관한 정보, 기타 정보수집, 정리 및 제공을 실시한다.</u> <u>2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전 항목 시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실시에 도움이 되도록 체제 정비를 실시한다.</u></p>	<p><u>제2부 기본적 시책</u> <u>(조사 연구의 추진 등)</u> <u>제 11 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자살방지 등에 관한 조사 연구를 추진함과 동시에 정보 수집, 정리, 분석 및 제공을 실시한다.</u> <u>2 국가는 전 항목 시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실시에 도움이 되도록 체제 정비를 실시한다.</u></p>
<p><u>(삭제)</u> <u>(인재 확보 등)</u> <u>제 16 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대학, 전문학교, 관련단체 등과의 연계 협력을 도모하면서 자살대책과 관련한 인재 확보, 양성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u></p>	<p><u>(국민의 이해 증진)</u> <u>제 12 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교육활동, 광고활동 등을 통해 자살 방지 등에 관한 국민의 이해가 깊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u> <u>(인재 확보 등)</u> <u>제 13 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자살 방지 등과 관련한 인재 확보, 양성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u></p>
<p><u>(마음 건강 유지와 관련한 교육 및 계몽 추진 등)</u> <u>제 17 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직장, 학교, 지역 등에서 국민의 마음 건강 유지와 관련한 교육 및 계몽 추진 및 상담 체제 정비, 사업주, 학교 교직원 등에 대한 국민의 마음 건강 유지와 관련한 연수 기회 확보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u> <u>2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전 항목의 시책으로 대학 및 고등 전문학교와 관련한 것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대학 및 고등학교, 전문학교의 교육 특성을 배려하지 않으면 안된다.</u> <u>3 학교는 해당 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아동, 학생 등의 보호자, 지역 주민, 기타</u></p>	<p><u>(마음 건강 유지와 관련한 체제 정비)</u> <u>제 14 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직장, 학교, 지역 등에 있어 국민의 마음의 건강 유지에 관한 체제 정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u> <u>(신설)</u></p>

<p>관계자와의 연계를 도모하면서, 해당 학교에 제적하고 있는 아동, 학생 등에 대한 각자가 소중한 개인으로서 함께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데 의식 함양 등에 도움이 되는 교육 또는 계몽, 어려운 사태, 강한 심리적 부담을 받았을 경우 등에 대한 대처 방법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 또는 계몽, 기타 해당 학교에 제적하고 있는 아동, 학생 등 마음 건강 유지와 관련한 교육 또는 계몽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p>	
<p>(의료제공체제의 정비) <b>제 18 조</b>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마음 건강 유지에 지장을 일으키는 것으로 자살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필요한 의료가 조기 및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정신건강에 관해 학습 경험을 가지는 의사(이하 이 조항에 있어 「정신과의」라고 한다)의 진료를 받기 쉽도록 환경 정비, 신체 상해 및 질병에 대한 진료의 초기 단계의 해당 진료를 실시하는 의사와 정신과 의사와의 적절한 연계 확보,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의사와 정신과 의사와의 적절한 연계 확보, 정신과 의사와 그 지역에서 자살대책과 관련한 활동을 실시하는 기타 심리, 보건 복지 등에 관한 전문가, 민간 단체 등 관계자와의 원활한 연계 확보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p>	<p>(의료제공체제의 정비) <b>제 15 조</b>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마음 건강 유지에 지장을 일으키는 것으로 자살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필요한 의료가 조기 및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정신건강에 관해 학습 경험을 가지는 의사(이하 이 조항에 있어 「정신과의」라고 한다)의 진료를 받기 쉽도록 환경 정비, 신체 상해 및 질병에 대한 진료의 초기 단계의 해당 진료를 실시하는 의사와 정신과 의사와의 적절한 연계 확보,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의사와 정신과 의사와의 적절한 연계 확보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p>
<p>제 19 조 (생략)  (자살 시도자 등 지원) <b>제 20 조</b>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자살 시도자가 재시도 하지 않도록 자살 시도자 등 적절한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p>	<p>제 16 조 (생략)  (자살 시도자에 대한 지원) <b>제 17 조</b>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자살 시도자가 재시도 하지 않도록 자살 시도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p>
<p>(자살자의 친족 등 지원) <b>제 21 조</b>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자살 또는 자살 시도가 자살자 또는 자살 시도자의 친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해당 친족 등 적절한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p>	<p>(자살자의 친족 등에 대한 지원) <b>제 18 조</b>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자살 또는 자살 시도가 자살자 또는 자살 시도자의 친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해당 친족 등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p>

<p>(민간단체 활동의 지원)</p> <p><u>제 22 조</u>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민간 단체가 실시하는 자살 방지, <u>자살자의 친족 등</u> 지원에 관한 활동을 지원하기 <u>위해 조건, 재정상의 조치, 기타</u>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p>	<p>(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p> <p><u>제 19 조</u>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민간 단체가 실시하는 자살 방지 등에 관한 활동을 지원하기 <u>위해</u>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p>
<p><u>제 4 부 자살종합대책회의의 등</u></p> <p>(설치 및 소장 사무)</p> <p>제 23 조</p> <p>[생략]</p> <p>2 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무를 담당한다.</p> <p>1. <u>자살종합대책대강안</u>을 작성할 것</p> <p>2·3 [생략]</p>	<p><u>제 3 부 자살종합대책회의의</u></p> <p>(설치 및 소장 사무)</p> <p>제 20 조</p> <p>[생략]</p> <p>2 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무를 담당한다.</p> <p>1. <u>제 8 조 대강안</u>을 작성할 것</p> <p>2·3 [생략]</p>
<p><u>(회의 조직 등)</u></p> <p>제 24 조 [생략]</p> <p>2~7 [생략]</p> <p><u>(필요한 조직 정비)</u></p> <p><u>제 25 조 전 2 조에</u> 정하는 것 외에, 정부는 자살대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직의 정비를 도모한다.</p>	<p><u>(조직 등)</u></p> <p>제 21 조 [생략]</p> <p>2~7 [생략]</p> <p>[신설]</p>

○ 내각의 중요 정책에 관한 종합 조정 등에 관한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 행정 조직법 등 일부 개정안 법률(2015년 법률 제 66호) (일체) (부칙 제 2항 관계) (밑줄 부분은 개정 부분)

개정안	현행
<p>(후생노동성 설치법의 일부 개정)</p> <p>제 11 조 후생노동성 설치법 (1999년 법률 제 97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생략]</p> <p>제 4 조 제 1 항 중 「전 조」 을 「전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으로 고치고, 같은 항 제 89 호를 다음에 다음의 1 호를 추가한다.</p> <p>89 의 2 <b>자살종합대책대강</b> (자살대책기본법 (2006년 법률 제 85호) <b>제 12 조</b>에 규정하는 자살대책 대강을 말한다)의 작성 및 추진에 관한 것.</p> <p>제 4 조에 다음과 같이 1 항을 추가한다.</p> <p>3 제 1 항에 정하는 것 외에, 후생노동성은 전 조 제 3 항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같은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임무와 관련한 특정 내각의 중요 정책에 대해 해당 중요 정책에 관해서 각의에서 결정된 기본적인 방침에 준하여 행정 각부 시책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기획 및 입안, 종합 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p> <p>[생략]</p>	<p>(후생노동성 설치법의 일부 개정)</p> <p>제 11 조 후생노동성 설치법 (1999년 법률 제 97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생략]</p> <p>제 4 조 제 1 항 중 「전 조」 을 「전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으로 고치고, 같은 항 제 89 호를 다음에 다음의 1 호를 추가한다.</p> <p>89 의 2 <b>자살대책의 대강</b> (자살대책기본법 (2006년 법률 제 85호) <b>제 8 조</b>에 규정하는 자살대책 대강을 말한다)의 작성 및 추진에 관한 것.</p> <p>제 4 조에 다음과 같이 1 항을 추가한다.</p> <p>3 제 1 항에 정하는 것 외에, 후생노동성은 전 조항 제 3 항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같은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임무와 관련한 특정 내각의 중요 정책에 대해, 해당 중요 정책에 관해서 각의에서 결정된 기본적인 방침에 준하여 행정 각부 시책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기획 및 입안, 종합 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p> <p>[생략]</p>